2026 국민건강보험공단 FINAL 봉투모의고사 정오표 [1쇄 기준]

페이지	틀림(誤)	바름(正)
3회 58p	**63번 선택지** ① ㉠, ㉡ ② ㉡, ㉢ ③ ㉡, ㉣ ④ ㉢, ㉣	① ㉠, ㉡, ㉢ ② ㉡, ㉢, ㉣ ③ ㉠, ㉣ ④ ㉢, ㉣
3회 62p	**74번 선택지 ②**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서류를 조작해 3천만 원의 재가·시설 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각돼 업무정지 명령을 받았으나, 업무정지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이 크다는 우려가 인정되어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해 과징금 5천만 원이 부과되었다.	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서류를 조작해 1억 원의 재가·시설 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각돼 업무정지명령을 받았으나, 업무정지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이 크다는 우려가 인정되어 업무정지 명령을 갈음해 과징금 3억 원이 부과되었다.
정답 및 해설 62p	**63번 해설** ㉡, ㉢는 제41조 제1항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이다. ㉠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, 제23조 제1항 '제1호' 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을 받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. ㉣ 제41조 제2항에 따르면, 수급자가 본인부담금을 감면받는 경우, 이에 필요한 사항은 '보건복지부령'으로 정한다.	㉡, ㉢은 제41조 제1항에서, ㉣은 제41조 제2항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이다. ㉠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, 제23조 제1항 '제1호' 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을 받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.
정답 및 해설 65p	**74번 해설** 1항에 따르면, 특별자치시장.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야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해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하지만, 제37조 제1항 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였으므로, 과징금 부과로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할 수 없다.	1항에 따르면, 특별자치시장.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명령을 해야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해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하였으므로, 이는 틀린 설명이다.